

#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 유족급여, 특별급여 제도 -

## 1. 유족급여 제도

### 가. 의의

“유족급여”라 함은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산재보험법 제43조)

유족급여는 근로자에 의하여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던 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업자금 등 일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0. 7. 1. 시행)

### 나.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의 추정

##### (1)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 멸시 또는 항공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항공 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 경우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2) 사망 추정의 효과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청구가능

##### (3) 보험급여 청구 절차

① 근로자 실종, 사망확인신고서를 제출

② 그 외는 통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절차에 준함.

##### (4) 사망추정으로 인한 보험급여 수령 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

① 선의인 경우 : 당해 근로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수령하였던 보험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악의인 경우 : 당해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는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에 달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유족급여액

〈표 1〉 참조

### 라. 유족급여 청구권자(수급권자)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산재보험법 제43

##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조의 2)

〈표 1〉 유족 급여액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 연금	<p>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p> <p>2. 가산금액 유족보상년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1인당 급여 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1)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을 하고 있음.)

-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④ 신체장해등급 제3급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2)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이다.(동조 3항)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 일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43조의3 3항)

## (2) 수급자격자의 실격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의 재혼,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때, 신체장해등급 제3급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수급자격을 잃는다.(산재보험법 제43조의3)

## (3) 수급자격의 이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동조 2항)

## 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 (1) 개요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산재보험법 제43조)

## (2)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1)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형제자매(산업보험법 제43조의 1항 본문)

2) 수급권자의 순위는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우선순위를 인정

-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 산재보상실무

## 조부모(산재보험법 제43조의4)

- ② 위와 같은 생계유지 관계가 없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생계유지 관리가 있던 형제자매
- ③ 생계유지 관계가 없던 형제자매
- ④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3) 같은 순위에 있는 유족이 2이상일 경우에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43조의4 1항 후단)
- 4) 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동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동조 4항)
- 5) 유언으로 유족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른다.(동조 4항)

## (3) 청구절차

- ①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 또는 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
- ② 시기 및 내용

구 분	청구시기	급여내용	제출서류
일시금 청 구	사망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회사와 공단에 제출
연 금 청 구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4회(2, 5, 8, 11월)	급여기초일액의 47%부터 67%까지(기본금액 47% + 1인당 5%가산, 20%까지 가산 가능)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2부작성, 회사와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 유족보상일시금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  
(사인미상의 경우)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 1통  
(3통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안될 경우)
5.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 ■ 유족보상연금

1. █ 일시금청구서와 동일
2. █
3. █
4.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된 것)
5.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1부(연금수급권자격자로 장해 해당시)

## 바.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및 유족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여 피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① 수급권은 퇴직, 휴직 등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 ② 수급권의 양도 불가(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 또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수령위임 인정)
- ③ 압류불가 : 민사상의 강제집행이나 세무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청구권 압류 불가

### 보험급여의 수령 위임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받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에게 위임
- ② 수급권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족에게 위임
- ③ 수령위임할 수 있는 보험급여
  - 사업주에게 수령위임 가능 보험급여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 가족에서 수령위임 가능 보험급여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과 상병보상연금
- ④ 수령위임의 절차 : 보험급여 수령위임장을 첨부한 보험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 2. 특별급여 제도(장해.유족)

## 가. 의의

“특별급여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산재보험법 제46조)와 유족특별급여(동법 47조)가 있다.

## 나. 지급요건

- 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②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 ③ 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 다. 급여내용

## ① 장해특별급여

평균임금 30일분에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쓰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 [(평균임금의 30일분 × 노동력 상실률 ×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쓰계수) - 장해급여액]

## ② 유족특별급여

평균임금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 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쓰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액 [(평균임금의 30일분 - (평균임금의 30일분 × 본인의 생활비율)) × 취업 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쓰계수 - 유족급여액]

〈별표〉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  
(산재법시행령 제41조 2항 관련)

등급	노동력 상실율
제 1 급	100 %
제 2 급	100 %
제 3 급	100 %

## 〈사망자본인의 생활비 비율〉

구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40%
부양가족 1인	35%
부양가족 2인	30%
부양가족 3인 이상	25%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취업가능기간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취업정년으로 하며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만55세

## 라. 청구절차

“장해(유족)특별 급여청구서”(산재보험법 서식규정 별지 제62호)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갑)(을) 인감증명서 각1부, 근로자의 수령시 사업주는 공단에 납부계약서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